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371
----------	-----

제출년월일 : 2017.10.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은, 토지 처분 1건 5필지 7,495㎡ 205,669천원입니다.

가. 토지처분 : 1건 5필지 7,495㎡ 205,669천원

① (주)평창초콜릿 공장부지 매각(재무과)

▷ 평창읍 중부리 257-6번외 4필지 7,495㎡ 205,669천원

3. 첨부자료

- 가. 2017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3차 변경계획 1부.
- 나. 사업계획서
- 다. 관계법령 발췌 1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 감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합 계	토지	11	45,101	6,039,902	11	45,101	6,039,902			
		건물	4	4,944.78	9,108,924	4	4,944.78	9,108,924			
		기타									
	매 입	토지	10	43,319	5,427,318	10	43,319	5,427,318			
		건물	4	4,944.78	9,108,924	4	4,944.78	9,108,924			
		기타									
	교 환	토지	1	1,782	612,584	1	1,782	612,584			
		건물									
		기타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합 계	토지	1	7,764	473,025	2	15,259	678,694	1	7,495	205,669
		건물									
		기타									
	매 각	토지				1	7,495	205,669	1	7,495	205,669
		건물									
		기타									
	교 환	토지	1	7,764	473,025	1	7,764	473,025			
		건물									
		기타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2017년 균유재산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4차)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 정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비 고 (소유자)
	지 목	소 재 지	수 량				
토지처분 (1건, 5필지)			7,495	205,669			
소계(1건 5필지)			7,495	205,669			
1	전	평창읍 종부리 257-6	2,795	75,465	2017 하반기	(주)평창초콜릿 공장부지 매각	평창군
2	임	평창읍 종부리 257-11	3,131	84,537			평창군
3	임	평창읍 종부리 257-12	116	3,132			평창군
4	잡	평창읍 종부리 257-13	1,055	30,595			평창군
5	전	평창읍 종부리 257-14	398	11,940			평창군

<사업계획 1>

(주)평창초콜릿 공장부지 매각 계획

- 2012년부터 (주)평창초콜릿에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 평창읍 종부리 257-6외 4필지에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이 지난 5월 준공 등을 고려하여, 공장부지 매각으로 업체의 자금난해소 및 동계올림픽 기간에 제품납품 등 공장의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유재산 대부현황

- 소재지 : 평창읍 종부리 257-6외 4필지 17,934㎡
- 대부목적 : 농산물가공시설 및 체험장 부지
- 대부기간 : 2012. 5. 8 ~ 2032. 5. 7 (20년간)
- 대부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9호
- 대부현황 세부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대부목적별 대부면적(㎡)		
				계	가공시설	체험장
합계	5필지		19,538	17,934	7,495	10,439
평창읍 종부리	257-6	전	13,480	13,234	2,795	10,439
평창읍 종부리	257-11	임	3,917	3,131	3,131	
평창읍 종부리	257-12	임	684	116	116	
평창읍 종부리	257-13	잡	1,055	1,055	1,055	
평창읍 종부리	257-14	전	402	398	398	

□ 공유재산 매각개요

- 매각재산 : 평창읍 종부리 257-6외 4필지
- 매각면적 : 농산물가공시설 7,495㎡ (가감정가 206백만원)
- 매각대상 : (주)평창초콜릿

□ 처분대상 재산목록

○ 처분대상토지 현황

(단위:m²,천원)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m ²)	매도면적 (m ²)	재산가액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합 계	5필지		19,538	7,495	74,948	205,669	
평창읍 종부리	257-6	전	13,480	2,795	27,950	75,465	평창군
	257-11	임	3,917	3,131	29,275	84,537	“
	257-12	임	684	116	1,143	3,132	“
	257-13	잡	1,055	1,055	11,605	30,595	“
	257-14	전	402	398	4,975	11,940	“

□ 향후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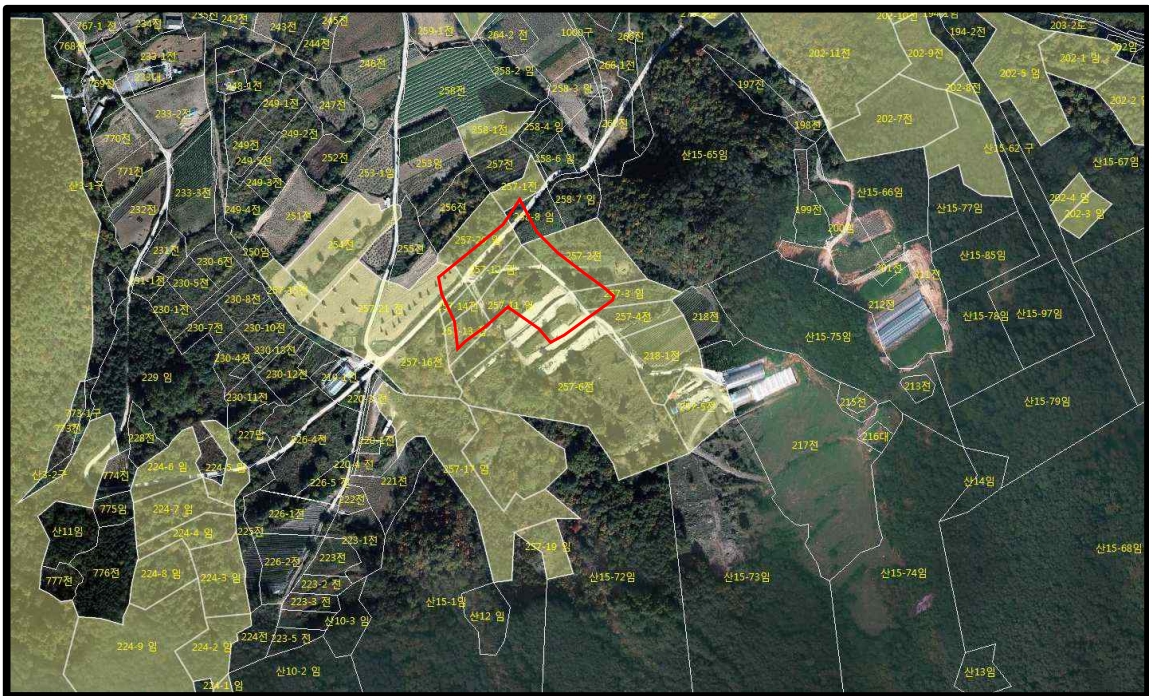
- 평창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 2017년 10월
- 토지 처분 : 2017. 11월

위치도 및 사진대장

○ 위치도



○ 지적도



○ 농산물가공처리시설



○ 사무실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议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议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议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2015.2.16, 2015.7.20, 2016.7.12]

1. ~ 18. 생략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 ~ 24. 생략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10.6.28 제22221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0.08.04,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7,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2.16, 2015.7.20, 2016.7.12]

1. ~ 27. 생략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 33. 생략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0.17>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4. 삭제 <2015.10.08.>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간 무상 이관
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8.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9.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10.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나.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